

2022년도 제2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문임기제 다급 (난민 심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난민심사 전문가(전문임기제 다급)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6월 2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직급

○ 선발예정기관 및 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임용예정기관	선발인원	계약기간
난민심사	전문임기제 다급	서울출입국·외국인청	1명	임용일 ~ '23. 4. 7.

2 담당예정 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기관	주요 직무
난민심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난민인정 신청 접수 및 난민인정 심사 ○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국가정황, 난민판례 및 해외 입법례 등 조사 ○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 유관기관 협력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 등

3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6항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별표4의2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 (경력경쟁채용시험 방법)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행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행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성별 · 학력 · 거주지 : 제한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

채용 구분		응시자격 요건																																			
난민심사 (전문임기제 다급)	경력 요건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 경력)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 경력)																																			
	학위 요건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 경력 요건의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합산 불가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 및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 붙임 [직무기술서] 참고																																			
우대요건 (인정기준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단 어학능력 우대요건은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함)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 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 관련분야 논문 및 연구실적(건별 차등 배점) ○ 영어 어학능력 우수자(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유효 기간 내의 점수만 인정) <table><tr><th rowspan="2">FLEX</th><th colspan="3">TOEFL</th><th rowspan="2">TOEIC</th><th rowspan="2">NEW TEPS</th><th rowspan="2">등급</th></tr><tr><th>CBT</th><th>PBT</th><th>IBT</th></tr><tr><td>900점 이상</td><td>263점 이상</td><td>623점 이상</td><td>115점 이상</td><td>941점 이상</td><td>525점 이상</td><td>A</td></tr><tr><td>800점~899점</td><td>243점~262점</td><td>593점~622점</td><td>107점~114점</td><td>890점~940점</td><td>452점~524점</td><td>B</td></tr><tr><td>700점~799점</td><td>227점~242점</td><td>567점~592점</td><td>99점~106점</td><td>790점~889점</td><td>386점~451점</td><td>C</td></tr></table>					FLEX	TOEFL			TOEIC	NEW TEPS	등급	CBT	PBT	IBT	900점 이상	263점 이상	623점 이상	115점 이상	941점 이상	525점 이상	A	800점~899점	243점~262점	593점~622점	107점~114점	890점~940점	452점~524점	B	700점~799점	227점~242점	567점~592점	99점~106점	790점~889점	386점~451점	C
FLEX	TOEFL			TOEIC	NEW TEPS	등급																															
	CBT	PBT	IBT																																		
900점 이상	263점 이상	623점 이상	115점 이상	941점 이상	525점 이상	A																															
800점~899점	243점~262점	593점~622점	107점~114점	890점~940점	452점~524점	B																															
700점~799점	227점~242점	567점~592점	99점~106점	790점~889점	386점~451점	C																															
가산요건 (인정기준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 이상 보유자(등급별 차등 배점)																																			

<공통>

- 경력, 학위, 우대요건 등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됨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 ※ **경력요건, 학위요건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1하여 응시**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 단, 아래 우대요건에서 인정하는 경력요건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 단, 어학능력 우대요건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일(8. 5.)을 기준으로 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 제출 건에 한함
-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표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간략)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 변호사 등의 연수 및 수습기간,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인턴경력은 불포함
-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근로계약서, 인사 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와 이의 검증을 위한 ‘폐업사실증명원’,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로 제출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경력’ 요건의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은 합산 불가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우대요건>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소지자
-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 (연차별 차등우대)
-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함
-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표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간략)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 변호사 등의 연수 및 수습기간,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인턴경력은 불포함
- ※ 우대 요건의 직무 경력은 응시에 필요한 기본경력을 제외한 후 산정되며,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근로계약서, 인사 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와 이의 검증을 위한 ‘폐업사실증명원’,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로 제출

-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 및 연구 실적 (학위논문 제외)
 - ※ 최근 5년 이내('17.1.1 이후) SSCI,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KCI 등재후보지 및 학위논문은 제외)
- 영어 어학능력 우수자
 - ※ 어학 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점수만 인정, 2개 이상 등급인 경우에는 높은 등급만 인정
 - ※ 어학 성적의 유효기간 인정 기준은 '최종합격자 발표일(8. 5.)'을 기준으로 함에 유의
- (가산)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 이상 보유자 (등급별 차등우대)
 - ※ 2017.1.1. 이후 실시되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

5 시험 방법

가. 제 1 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경력, 논문·연구실적, 영어 어학능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나. 제 2 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위원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시 불합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6 시험일정

채용재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22. 6. 24.(금) ~ 7. 4.(월)	6. 29.(수) ~ 7. 4.(월)	7. 13.(수) (7. 14.(목))	7. 20.(수)	8. 5.(금)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22. 6. 29.(수) ~ 7. 4.(월)

다. 접수처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 채용담당자 앞(02-2650-6221)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7층 총무과

라.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며, 겹봉투에 “전문 임기제 다급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우편 접수된 원서의 응시번호는 우편 발송처로 응시표를 배부하여 개별 통보 예정)

8 제출 서류

- * 아래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됨
- * 외국어로 발급(영문 제외)된 증명서의 경우 한글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 *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미사용)**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서식 1)	○ 제출내역 체크 후 서명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2)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행정수수료 용) 부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3)	○ 관련분야 경력은 상세히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 학위, 업무실적은 증빙서류(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4)	○ A4 3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5)	○ A4 5매 이내로 작성
6. 자격요건 관련 경력(재직) 증명서 등 1부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근로 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담내역 등) - ‘연수’, ‘실무수습’은 경력증명서 등에 해당 ‘연수’, ‘실무수습’임을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폐업 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기타자료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제출 ○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7. 자격요건 관련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6)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서식 7)	○ 자필 기재 및 서명
9. 학위증명서(위원 위촉 시 제척 기피 사유 확인용) 1부	○ 학사, 석사, 박사 학위증명서 제출 - 서류 및 면접위원 위촉 시 제척·기피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시험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아래 사항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0. 주민등록 초본 1부	○ 남성에 한함,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부 추가 제출)
11. 우대요건 관련 변호사 자격증 사본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사본 등 제출

구 분	내 용
12. 우대요건 관련 경력(재직) 증명서 등 1부	○ 해당자에 한함 ○ 위 6번 항목의 경력이 우대요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6번 항목 경력(재직)증명서만 제출
13. 우대요건 관련 논문 및 연구실적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논문 및 연구실적 요약서 1부 <별지서식 8> ○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 최근 5년 이내(17.1.1 이후) SSCI,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KCI 등재후보지 및 학위논문은 제외)
14. 우대(가산)요건 관련 '영어 능력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9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보수 관련 법령에 따라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다급	63,693천원	45,237천원

- ※ 공무원 보수 관련법령에 따른 수당 등 연봉 외 급여는 별도 지급
-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10 유의 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및 제84조의2에 의거,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자, 채용시험, 그밖에 인사 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 또는 보고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2. 8. 5.(금) ~ 9. 5.(월)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 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 확인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직위에 대한 직무내용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은 직무기술서 【붙임1】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득금액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인사관계 법령 및 인사혁신처의 각종 지침에 따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관련 문의사항 : 난민과(☎ 02-2650-6271)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 총무과(☎ 02-2650-6221)

【붙임1】 전문임기제 다급 난민심사분야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

주요업무	○ 난민인정 신청 접수 및 난민인정 심사 ○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국가정황, 난민판례 및 해외 입법례 등 조사 ○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 유관기관 협력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 등
------	---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별 역량) 기획력 ·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문제해결능력,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	---

필요지식	○ 난민협약, 난민법, 소송수행 등 관련 지식 ○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정치·사회 현황 등에 대한 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난민심사 등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 경력)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 경력)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 경력 요건의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합산 불가
	학위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경력 : 유엔난민기구, 난민지원단체 등에서 난민 면접 및 보고서 작성 등 관련업무 수행 경력 ○ 직무분야 학위 : 문화학 계열, 인류학 계열, 지역학 계열, 국제학 계열, 법학 계열, 국제정치학 등 ※ 어학, 통번역학은 직무분야 학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우대요건 (인정기준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단어학능력 우대요건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함)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논문 및 연구실적이 1건 이상인 자 - 최근 5년 이내('17.1.1 이후) SSCI,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학위논문은 제외 ○ 영어어학능력 우수자(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유효기간 내의 점수만 인정) ※ 외국어 능력시험 기준 등급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가산요건 (인정기준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 이상 보유자 ※ 2017.1.1. 이후 실시되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	

(별지서식 1호)

응시분야 : (난민심사) / 응시기관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번호	제출서류명	필수여부	제출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필수	☐
2	응시원서	필수	☐
3	이력서	필수	☐
4	자기소개서	필수	☐
5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
6	자격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사본	필수	☐
7	자격요건 관련 학위증 사본	필수	☐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
9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필수	☐
10	학위(학사, 석사, 박사) 증명서 사본(위원 위촉시 확인용)	필수	☐
11	주민등록초본 사본 (남자의 경우에만 제출-병역사항 기재된 것)	해당자만	☐
12	우대요건 관련 변호사 자격증 사본	해당자만	☐
13	우대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등 사본	해당자만	☐
14	우대요건 관련 논문 및 연구실적,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만	☐
15	우대(가산)요건 관련 영어능력 및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만	☐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여 제출하시고, 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성명

(서명)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2년도 제2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문임기제 다급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난민심사				(한자)
응시기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복수국적 해당여부	☐ 예, ☐ 아니오
주민등록 번호	-				
응시요건	경력			학위	
	☐ 경력1	☐ 경력2	☐ 경력3	☐ 학위4	☐ 학위5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2022년도 제2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문임기제 다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분야	난민심사	응시기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성명	(한글)	(한자)			
2022년 월 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난민심사
3. 응시기관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4. 응시요건 : 공고문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요건 중 택1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선택 오류사항 예시>

1. 중복선택
 - 응시요건을 택 1하지 않고 2개 이상 선택한 경우

응시요건	경력			학위	
	☒ 경력1	☐ 경력2	☐ 경력3	☐ 학위4	☒ 학위5

2. 미 선택
 - 응시요건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응시요건	경력			학위	
	☐ 경력1	☐ 경력2	☐ 경력3	☐ 학위4	☐ 학위5

※ 응시원서에 기입된 선택표시와 이력서에 기입된 선택표시가 다를 경우, 이력서를 기준으로 함

5.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6.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7. 복수국적 : 예, 아니오 중 선택(체크) 표시
8.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거나
 첨부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정부수입인지(7,000원)를 구입하여 응시원서 뒤에 첨부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도 발급 가능(종이문서용 전자수입
 인지 발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별지서식 3호)

이 력 서

응시 번호:

1. 공통 사항

응시 분야	난민심사	응시 기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응시 요건	경력			학위		성명	
					☐ 경력 1	☐ 경력 2	☐ 경력 3	☐ 학위 4	☐ 학위 5		

2. 응시 자격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자격요건 충족 주요 경력만 기재	20xx. x. x ~ 20xx. x. x (0년0개월)	사원	상세히 작성
학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종류	
	자격요건 충족에	필요한 학위만 작성		

3. 우 대 (가 산) 사 항

변호사	자격증 취득일		자격검증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자격요건 충족 후 초과 근무 경력만 기재	20xx. x. x ~ 20xx. x. x (0년0개월)		사원	상세히 작성		
관련 분야 연구/ 논문실적	제목		저자	학술지명	발행연월일		
한국사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행기관	
어학	시험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점수	영문성명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 성명 : (인)

이 력 서 작 성 요 령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난민심사
 3. 응시기관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4. 응시요건 : 공고문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요건 중 택1
-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선택 오류사항 예시>

1. 중복선택
 - 응시요건을 택 1하지 않고 2개 이상 선택한 경우

응시요건	경력			학위	
	☒ 경력1	☐ 경력2	☐ 경력3	☐ 학위4	☒ 학위5

2. 미 선택
 - 응시요건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응시요건	경력			학위	
	☐ 경력1	☐ 경력2	☐ 경력3	☐ 학위4	☐ 학위5

※ 응시원서에 기입된 선택표시와 이력서에 기입된 선택표시가 다를 경우, 이력서를 기준으로 함

5. 응시자격

○ 경력

-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②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최근 경력부터 기재)
 - 근무기간(시작일, 종료일), 근무기관 등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학위

-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②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③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6. 우대요건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①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말함
-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등 사본 1부 제출

○ 경력

-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 ②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부터 기재)
 - 근무기간(시작일, 종료일), 근무기관 등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별지서식 4호)

자 기 소 개 서

☐ 응 시 분 야 :	난민심사
☐ 응 시 기 관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성 명 :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 . 작 성 자 : (인/서명)	

※ 14포인트, 굴림체(각 항목별 번호는 진하게, 기타 내용은 보통)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 응시분야 : 난민심사

□ 응시기관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성명 :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 실천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글자크기는 14포인트)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 . 작 성 자 : (인/서명)

※ 14포인트, 굴림체(각 항목별 번호는 진하게, 기타 내용은 보통)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2022년도 제2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문임기제 다급 경력
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 등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 등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서명)

생년월일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학위 등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경력·논문·연구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 제5항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비위면직자 여부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논문, 연구실적

□ 논문

- 게재된 학술지 :
- 제 목 :
- 내용 요지(A4용지 반매 이내)

□ 연구실적

- 게재된 학술지 :
- 제 목 :
- 내용 요지(A4용지 반매 이내)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요망)

-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② 직무기술서에 따라 '17.1.1. 이후 관련분야에서 정규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승인된 논문 및 연구실적만 인정
 - SSCI,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실적만 인정(등재된 학술지 표지, 내용, 작성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사본 첨부)